△△기지지사 복무기강 조사결과

처 분 요 구 서

2016.2.

감 사 실

경고/부서경고/통보

번 호 16-복무-1

제 목 차량 주유 및 경상정비용 유류관리 불철저

소 관 부 서 △△기지지사

관 련 부 서 ◇◇◇◇치

관 련 자

내 용

우리 공사에서는 공사 보유차량의 유류비 지급에 대하여 『차량관리』 지침서 5.5.1절에 따라 차종 및 운영여건과 차량제작사의 연비 기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 토록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, 각 지사에서는 지사 실정에 맞는 차량 주유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량 담당자는 공사 차량에 주유 및 해당 차량에 소요된 비용을 처리해야 함.

그러나, △△기지지사 ○○○는 지사 통근버스(78더□□□□□1))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업무부서의 촉박한 경상정비 업무 수행 및 담당자 유류비용처리 업무 누락분을 통근버스 차량에 주유한 유류량에 추가하여 대체 결제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였음.

1. 사실관계

- 가. 2014. 8. 1 (금) 前 통근버스 운전기사 ○○○이 지정 주유소에서 통근버스 (78더㎜㎜)에 경유 223리터를 주유하고 "외상매출전표" 1매(고객용)를 가지고 사무실로 복귀함
- 나. 당일 차량담당자 ○○○는 회사 차량 관리(세차)를 위하여 지정 주유소인 "◐◐◐◐◐◐◐॰"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던 중, 주유소 총무가 잠깐 보자고 하여 주유소 사무실로 가니까

^{1) 2012.4.30}일 자산 취득 [모델 : 수퍼크루저 FX-212 (제작사:□□버스㈜), 연료탱크 용량 : 400리터, 취득 가액 : 171,216,010원(부가세 별도)]

- 다. 주유소 총무가 7월 결산을 하다 보니 우리 지사 현장 정비부서에서 급하다면서 외상으로 가져간 유류(휘발유, 경유)에 대한 정산이 누락이 되었다면서 정산을 요구함
- 라. 마침 우리 지사 통근버스가 조금 전에 주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통 근버스에 주유했던 양에 40리터(금액:68,760원)를 추가한 263리터 "주유권"에 서명한 후 주유소 총무에게 전달하고
 - ※ 40리터에 대한 "보관증2)"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○○○가 진술
- 마. 2014년 8월 29일(전표번호 SSB-2014-◈◆◆◆) "주유권(263리터)"을 증빙으로 회계처리함
- ※ 추가 처리한 유류 40리터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△△기지지사 계전팀에서 우기대비 154kV 맨홀(약10여개소) 양수작업 등을 위한 펌프, 발전기에 사용된 유류 외상분 처리용으로 추정됨 (오랜 시간이 경과된 사안이라정확한 증빙 근거는 확인하지 못 함)

2. 기타사항

회사 구매 통근버스 지속운영 여부는 2009년 구매검토 시점 대비 2016년 1월 현재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재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.

□ 운영적인 측면 검토

구 분	2009년	2016년	비고	
운전원	전용기사 운영	파견업체를 통한 기사 수급	원가 상승 요인	
비용보전	경상계약(KOGAS)에 서 감가상각비로 보전	정산항목에서 제외	원가 상승 요인	
활용성	출퇴근 및 행사 등 다 양한 목적으로 이용	조직활성화, 봉사활동, 교육원 교육생 이동 등 활용	타 지사와의 형평 성 문제 발생 소지	

²⁾ 주유소 총무 진술에 의하면 "보관증"의 운영은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, 판매량과 청구량의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 2014년 8월 1일 당일 결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발행하고 교부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

□ 경제적인 측면 검토 ('15년 △△기지지사 버스 운영 기준 : 구매1대, 임차1대)

(단위 :원)

구 분	구매버스 1년간 운영의 경우	임차버스 1년간 운영의 경우	비고
감가상각비	17,121,601	-	10년(15만km) 운영 기준 (취득가:171,216,010원)
임 차 료	-	68,400,000	
인 건 비	35,440,819	-	파견근로업체 계약기준
유 류 비	12,235,335	-	
수 리 비	2,590,400	-	취득년월:2012.4.30 (년도 경과시 비용 증가 예상)
보 험 료	1,132,700	-	
공 과 금	316,000	-	자동차세 등
기 타	15,034,000	-	차량담당직원 인건비 ³⁾ : 분 담비율 ⁴⁾ 40%기준
매각처분금	-7,317,182		2009년 △△기지지사 버스 매각 기준
합 계	76,553,673	68,400,000	임차운영 대비 11.9% 비용 과다 소요

자료 : △△기지지사 운영 자료 재구성

※ 상기 검토 내용은 감사인이 조사,확보된 자료 기준으로 검토한 것임으로 관점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으로 실무부서에서 추가 검토시 참고로 활용 하시기 바람니다.

<조치할 사항>

차량 담당자로서 차량 주유관리를 불철처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경고 조치하시고, 경상정비용 유류관리를 불철저하게 처리한 관련부서는 부서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관련부서 및 소관부서에서는 통근버스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
3) 직급별 평균임금 기준 : 상용원 7등급 37,584천원 기준 [기획예산팀-211('15.5.19)]

4) 담당업무: 차량관리, 시설관리, 소모품관리, 사회공헌 등

<관련자 및 귀책사유>

소속	직·성명	관리기간	담당업무	귀책사유	현근무부서	비고
△△ 기지 지사	팀원 ○○○	2010.11.29 ~ 현재	차량관리 업무	차량 주유관리 불철저	좌동	경고
	(계전팀)	_	-	경상정비용 유류관리 불철저	_	부서경고
◇◇ ◇◇처	_	_	-	통근버스 운영 방안	_	통보
△△ 기지 지사	_	_	_	개선 검토	_	통보